

읍·면·동 체육회 규정

제정 2021. 06. 09.

개정 2021. 12. 21.

개정 2023. 11. 23.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남양주시체육회(이하 “본회” 라 한다) 정관 제6조 제3항 및 제35조에 따라 남양주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읍·면·동체육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11. 23.)

② 읍·면·동체육회는 해당 읍·면·동명을 포함하여 ‘○○○체육회’로 명칭을 정해야 하며, 영문 명칭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목적) 읍·면·동체육회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읍·면·동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과 체육익의 인권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양성으로 시·군·구 및 시·도 및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3.)

제3조(소재지) 읍·면·동체육회의 사무소는 남양주시 각 읍·면·동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읍·면·동체육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읍·면·동체육회에 가입한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개정 2021. 12. 21.)
2. 읍·면·동체육회 내 각종 체육대회 개최 (개정 2021. 12. 21.)
3. 남양주시체육회가 개최하는 대회 참가 및 남양주시체육회가 승인한 사업의 주최·주관 (개정 2021. 12. 21.)

4. 읍·면·동체육회의 선수·지도자 및 심판 등의 양성 (개정 2021. 12. 21.)
5. 읍·면·동 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개정 2021. 12. 21.)
6. 읍·면·동주민 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개정 2021. 12. 21.)
7. 읍·면·동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개정 2021. 12. 21.)
8. 읍·면·동의 학교체육(청소년체육활동 포함),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 사업 (개정 2021. 12. 21.)
9. 읍·면·동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문화사업 (개정 2021. 12. 21.)
10. 그 밖의 지역 체육 진흥 및 읍·면·동체육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21. 12. 21.)

제5조(읍·면·동체육회 제공이익의 수혜자) ① 읍·면·동체육회는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11. 23.)

1. (삭제 2021. 12. 21.)

2. (삭제 2021. 12. 21.)

② 읍·면·동체육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종교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3. 11. 23.)

③ 삭제 (2021. 12. 21.)

제2장 조 직

제6조(조직) ① 본회 읍·면·동체육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개정 2021. 12. 21.)

1. 읍·면·동체육회는 산하에 지역별 체육단체를 구성해야 하며, 본회 가입 종목 3개 이상, 50명 이상의 동호인 및 체육 관련 관계자, 해당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② 읍·면·동체육회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③ (삭제 2021. 12. 21.)

제7조(권리와 의무) ① 읍·면·동체육회는 본회 사업을 위해 연 회비 360,000원을 당해 연도 3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삭제 2021. 12. 21.)

② 읍·면·동체육회는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제8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21. 12. 21.)

1. (삭제 2021. 12. 21.)

2. (삭제 2021. 12. 21.)

3. (삭제 2021. 12. 21.)

4. (삭제 2021. 12. 21.)

5. (삭제 2021. 12. 21.)

③ 읍·면·동체육회가 본회의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본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회 정관 제8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대의원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본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제3장 대의원 총회

제8조(총회의 구성) ① 읍·면·동체육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1.)

1. 읍·면·동 산하 기관·사회단체장 또는 종목별 체육 관련 관계자 등으로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 12. 21.)

2.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3.)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읍·면·동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1. 12. 21.)

1. (삭제 2021. 12. 21.)

2. (삭제 2021. 12. 21.)

3. (삭제 2021. 12. 21.)

4. (삭제 2021. 12. 21.)

③ 읍·면·동체육회의 대의원은 다른 읍·면·동체육회의 대의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21.)

④ (삭제 2021. 12. 21.)

⑤ (삭제 2021. 12. 21.)

⑥ (삭제 2021. 12. 21.)

⑦ (삭제 2021. 12. 21.)

⑧ (삭제 2021. 12. 21.)

⑨ (삭제 2021. 12. 21.)

⑩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23. 11. 23.)

제9조(총회의기능) 체육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 12. 21.)

1. 읍·면·동체육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12. 21.)
2. 단체의 가입, 강등 및 제명 (신설 2021. 12. 21.)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12. 21.)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12. 21.)
5. 기타 중요 사항 (신설 2021. 12. 21.)

제10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읍·면·동체육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12. 21.)

②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신설 2021. 12. 21.)

제11조(총회의소집) ① 읍·면·동체육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12. 21.)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신설 2021. 12. 21.)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신설 2021. 12. 21.)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신설 2021. 12. 21.)
 4. 제25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2023. 11. 23.)
-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어나 대의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 ④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 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1. 12. 21.)
- ⑥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당해 읍·면·동체육회에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 ⑦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및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구체적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 ⑧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 ⑨ 총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원격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23.)

제12조(의사및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21.)

1. 삭제 (2021. 12. 21.)
2. 삭제 (2021. 12. 21.)

제13조(총회의결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 12. 21.)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신설 2021. 12. 21.)
2. 금전 및 재산의 주고받음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읍·면·동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개정 2023. 11. 23.)

제14조(임원의불신임) ① 총회는 읍·면·동체육회의 임원(사무장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와 같다.)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삭제 2021. 12. 21.)
2. (삭제 2021. 12. 21.)
3. (삭제 2021. 12. 21.)
4. (삭제 2021. 12. 21.)
5. (삭제 2021. 12. 21.)
6. (삭제 2021. 12. 21.)
7. (삭제 2021. 12. 21.)
8. (삭제 2021. 12. 21.)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3.)

-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신설 2021. 12. 21.)
-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읍·면·동 체육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 12. 21.)

제4장 이사회

제15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① 읍·면·동체육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21.)

② 읍·면·동체육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 12. 21.)

1. 사업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12. 21.)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신설 2021. 12. 21.)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12. 21.)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12. 21.)
5. 사무장의 임면동의 (신설 2021. 12. 21.)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신설 2021. 12. 21.)
7. 총회 안전 상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12. 21.)
8. 기타 중요사항 (신설 2021. 12. 21.)

③ (삭제 2021. 12. 21.)

④ (삭제 2021. 12. 21.)

⑤ (삭제 2021. 12. 21.)

⑥ (삭제 2021. 12. 21.)

제16조(이사회 소집) ① 읍·면·동체육회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12. 21.)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전·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③ 읍·면·동체육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신설 2021. 12. 21.)
2. 제26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신설 2021. 12. 21.)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신설 2021. 12. 21.)
-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읍·면·동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1. 12. 21.)
-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 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2. 21.)

제1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21.)

② (삭제 2021. 12. 21.)

제18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읍·면·동체육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삭제 (2021. 12. 21.)

2. 삭제 (2021. 12. 21.)

3. 삭제 (2021. 12. 21.)

4. 삭제 (2021. 12. 21.)

② 삭제 (2021. 12. 21.)

③ 삭제 (2021. 12. 21.)

제19조(서면결의) 읍·면·동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② 삭제 (2021. 12. 21.)

③ 삭제 (2021. 12. 21.)

④ 삭제 (2021. 12. 21.)

⑤ 삭제 (2021. 12. 21.)

⑥ 삭제 (2021. 12. 21.)

제5장 임 원

제20조(임원) ① 읍·면·동체육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1. 12. 21.)

1. 읍·면·동체육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인 (신설 2021. 12. 21.)

2. 부회장 7인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3.)

3. 이사 15인 이상 (회장, 부회장 포함) (개정 2023. 11. 23.)

4. 감사 2인 (신설 2021. 12. 21.)

② 읍·면·동체육회의 임원은 다른 읍·면·동체육회의 임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21.)

1. 삭제 (2021. 12. 21.)

2. 삭제 (2021. 12. 21.)

3. 삭제 (2021. 12. 21.)

4. 삭제 (2021. 12. 21.)

③ 읍·면·동체육회의 회장은 해당 읍·면·동 거주자로 한다. (개정 2021. 12. 21.)

④ 삭제 (2021. 12. 21.)

⑤ 삭제 (2021. 12. 21.)

제21조(회장의선출) ① 회장은 회장 선출 기구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 11.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읍·면·동체육회는 본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회는 이에 따른 심사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 기구는 별도로 구성하며, 본회 「회장 선거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체육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1.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3.)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 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재적수가 15명 미만인 되거나, 임기 만료로 이사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3.)

3. 읍·면·동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1. 23.)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읍·면·동체육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

⑧ 회장이 제6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12. 21.)

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장은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신설 2021. 12. 21.)

1. 제6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신설 2021. 12. 21.)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1. 12. 21.)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신설 2021. 12. 21.)

⑩ 제6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다만, 철회하거나 사퇴할 경우에는 그 날까지로 한다.)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1. 12. 21.)

⑪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회장 후보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기탁금액 및 반환 조건, 회장선출기구의 규모와 구성, 등록 및 선거 절차, 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부당한 선거개입 및 그에 따른 징계 등 회장선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본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11. 23.)

⑫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체육회를 대표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23.)

1. 국외에서 개최되는 체육 관련 행사·대회·회의 및 교섭 등(신설 2023. 11. 23.)

2.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가 주최하거나 주무부처와 합의한 국내개최 국제행사(대회, 회의를 포함한다) (신설 2023. 11. 23.)

제22조(선거의 중립성) ① 읍·면·동체육회의 임직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관계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2. 21.)

② 읍·면·동체육회의 임·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1 또는 대의원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체육회 이외 체육회 관계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읍·면·동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삭제 (2021. 12. 21.)

2. 삭제 (2021. 12. 21.)

3. 삭제 (2021. 12. 21.)

③ 남양주시체육회는 읍·면·동체육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체육회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읍·면·동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④ 삭제 (2021. 12. 21.)

⑤ 삭제 (2021. 12. 21.)

⑥ 삭제 (2021. 12. 21.)

⑦ 삭제 (2021. 12. 21.)

제23조(회장의 사고또는 궐위 시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순서가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이 없을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1. 23.)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람이 남양주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1.)

④ 회장의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제24조(임원의선임) ① 읍·면·동체육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유효하다. (개정 2021. 12. 21.)

③ 임원은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고르게 구성 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동일 대학(학사)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 12. 21.)

2. 전문체육관계자가 재적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을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4. 교육계인사와 읍·면·동체육회 임원이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5. 비경기인(학,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6. 특정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2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삭제 (2021. 12. 21.)

2. 삭제 (2021. 12. 21.)

3. 삭제 (2021. 12. 21.)

4. 삭제 (2021. 12. 21.)

⑥ 회장은 해당 읍·면·동장의 인준동의서를 받아 남양주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남양주시체육회가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3.)

⑦ 남양주시체육회가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아 회장의 인준을 하지 않는 경우 즉시 해당 서류의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삭제 (2021. 12. 21.)

2. 삭제 (2021. 12. 21.)

3. 삭제 (2021. 12. 21.)

⑧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정한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⑨ 삭제 (2021. 12. 21.)

⑩ 삭제 (2021. 12. 21.)

제2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읍·면·동체육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2. 21.)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12. 21.)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1. 12. 21.)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1.)

1. 읍·면·동체육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신설 2021. 12. 21.)

2. 이사회와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신설 2021. 12. 21.)

3. 재산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개정 2023. 11. 23.)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신설 2021. 12. 21.)

⑤ 임원이 체육회 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1.)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신설 2021. 12. 21.)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신설 2021. 12. 21.)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신설 2021. 12. 21.)

⑥ 회장을 비롯한 비상금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임원이 체육회(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회원단체,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비위의 사실로 대한체육회 또는 경기도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021. 12. 21.)

⑧ 임원이 체육회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021. 12. 21.)

⑨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체육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체육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개정 2021. 12. 21.)

제2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읍·면·동체육회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2. 21.)

1. 삭제 (2021. 12. 21.)

2. 삭제 (2021. 12. 21.)

3. 삭제 (2021. 12. 21.)

4. 삭제 (2021. 12. 21.)

5. 삭제 (2021. 12. 21.)

6. 삭제 (2021. 12. 21.)

7. 삭제 (2021. 12. 21.)

8. 삭제 (2021. 12. 21.)

9. 삭제 (2021. 12. 21.)

10. 삭제 (2021. 12. 21.)

11. 삭제 (2021. 12. 21.)

12. 삭제 (2021. 12.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체육회의 임원은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1.)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1.)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사무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2. 21.)

13. 삭제 (2021. 12. 21.)

⑥ 회장의 임기는 회장으로 당선된 후 직근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 이 확정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신설 2021. 12. 21.)

⑦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부회장 및 이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가 이사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 선임을 한 날에 임기가 시작된다. (신설 2021. 12. 21.)

⑧ 감사의 임기는 감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어 이후 2번째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1. 12. 21.)

⑨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임기만료 후 60일 까지로 한다 (신설 2021. 12. 21.)

⑩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 12. 21.)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11. 23.)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읍·면·동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12. 2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신설 2021. 12. 21.)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21.)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신설 2021. 12. 21.)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신설 2021. 12. 21.)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신설 2021. 12. 21.)
 -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12. 21.)

③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12. 21.)

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신설 2021. 12. 21.)

제28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등)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 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가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1. 23.)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21.)

1. 제24조제6항에 따라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신설 2021. 12. 21.)
2.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신설 2021. 12. 21.)
3. 체육회의 회원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신설 2021. 12. 21.)

제6장 동호인 클럽

제29조(지위 및 명칭) ① 동호인클럽은 읍·면·동체육회의 회원으로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개정 2021. 12. 21.)

② 동호인클럽은 읍·면·동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읍·면·동 소재지에 둔다. (개정 2021. 12. 21.)

제30조(동호인클럽의 총회) ① 동호인 클럽의 대의원은 다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21.)

1. 동호인클럽에 회원으로 가입한 동호인 중 8인 이상의 대표자로 구성 (개정 2023. 11. 23.)

② 읍·면·동체육회는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신설 2021. 12. 21.)

제31조(총회의 소집) 동호인클럽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동호인클럽의 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12. 21.)

제32조(동호인클럽의 규정 등) ① 동호인클럽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의 구성 및 운영,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읍·면·동체육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제33조(임원 인준 등) ① 동호인클럽에서 선출 및 변경이 발생할 경우 15일 이내에 읍·면·동체육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읍·면·동체육회에 서면으로 보고가 완료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개정 2021. 12. 21.)

② 읍·면·동체육회에 등록된 동호인클럽 임원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인준하기에 부적정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본회는 읍·면·동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읍·면·동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③ 인준 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임원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하여 체육발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인준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인준이 취소된 단체나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개정 2021. 12. 21.)

④ 삭제 (2021. 12. 21.)

제34조(규정 승인) ① 동호인클럽은 제32조에 따라 읍·면·동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읍·면·동체육회의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읍·면·동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② 삭제 (2021. 12. 21.)

제35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읍·면·동체육회는 동호인클럽으로부터 보고받은 규정 변경 및 임원선출 또는 변경에 대해서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동호인클럽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② 동호인클럽은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읍·면·동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③ 읍·면·동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호인클럽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④ 읍·면·동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 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동호인클럽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호인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12. 21.)

제36조(동호인클럽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호인클럽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읍·면·동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읍·면·동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에 수용 않을 경우 본회는 본회 규정 제7조에서 정한 권리 사항을 제한하거나 본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1. 승부조작 및 단체 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및 경기도 감사 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 요구가 있을 경우
 3. 본회 규정과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4. 60일 이상 장기간 읍·면·동 체육회장 궐위 또는 사고
 5. 읍·면·동체육회의 재정 악화, 가입 회원 중 50% 이상이 탈퇴, 각종 파벌과 분쟁으로 원만한 사업 수행·운영이 불가할 경우
- ②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별도로 둔다.

제7장 각종 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읍·면·동체육회는 사업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 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 11. 23.)

③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23.)

④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읍·면·동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 11. 23.)

⑤ 읍·면·동체육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23.)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읍·면·동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1. 12. 21.)

1. 체육회, 회원단체의 정관 및 규정 관리 (신설 2021. 12. 21.)

2. 체육회, 회원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 (신설 2021. 12. 21.)

3.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인정 심의 (신설 2021. 12. 21.)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 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3. 11. 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개정 2021. 12. 21.)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임·직원인 사람 (개정 2021. 12. 21.)

④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다른 각종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23.)

⑤ 이 규정 외에 스포츠 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 규정 및 경기도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읍·면·동체육회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12. 21.)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8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읍·면·동체육회에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12. 21.)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3.)

③ 삭제 (2023. 11. 23.)

④ 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15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23.)

제39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1. 12. 21.)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재산의 구분) ① 읍·면·동체육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 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 금
4. 운영 재산 중 이사회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 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의 사용용도는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다만,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체육회가 정한다. (개정 2021. 12. 21.)

제41조(재원) 읍·면·동체육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읍·면·동체육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단체의 회비 (개정 2021. 12. 21.)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개정 2021. 12. 21.)
3. 기부금 및 찬조금 (개정 2021. 12. 21.)
4. 사업 수익금 (개정 2021. 12. 21.)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개정 2021. 12. 21.)

6.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개정 2021. 12. 21.)
7. 기타 수입금(동호인 등록비 등) (개정 2021. 12. 21.)

제42조(잉여금의 처리) 읍·면·동체육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3. 11. 23.)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 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재산의 관리) ① 읍·면·동체육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읍·면·동체육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읍·면·동체육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읍·면·동체육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체육회의 재산 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 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읍·면·동체육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 단체, 본회, 읍·면·동체육회의 임직원
2. 읍·면·동체육회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 단체, 본회, 읍·면·동체육회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개정 2023. 11. 23.)

제45조(회계연도) 읍·면·동체육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읍·면·동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 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읍·면·동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 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게시판, 전채 매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감사등) ① 읍·면·동체육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읍·면·동체육회의 회계 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읍·면·동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8조(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보호) 읍·면·동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본회가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9장 사무국

제49조(사무국) ① 읍·면·동체육회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④ 사무장 및 직원은 법령 및 인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0장 보 칙

제50조(해산 및 탈퇴) ① 읍·면·동체육회는 재적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 및 탈퇴 결의로 해산·탈퇴 할 수 있으며, 본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읍·면·동체육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1조(규정 변경) ① 읍·면·동체육회의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본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읍·면·동체육회의 규정은 본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본회가 읍·면·동체육회의 규정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면·동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2조(규정 제·개정 등) ① 읍·면·동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읍·면·동체육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읍·면·동체육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읍·면·동체육회의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3조(규정의 해석) ① 이 규정은 읍·면·동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읍·면·동체육회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읍·면·동체육회의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읍·면·동체육회가 본회의 규정,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본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4조(제한사항) ① 읍·면·동체육회가 본회의 규정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본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회는 규정 제7조에서 정한 권리 사항을 제한하거나 본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신설 2023. 1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약서

소속 :

직위 :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

남양주시체육회 규정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격히 서약합니다.

1. 체육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기로 한다.

1. 생활체육 동호인의 저변확대 및 우수선수 양성에 주력하기로 한다.

1. 본 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사업 및 기타행사는 체육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기로 한다.

1. 본 단체에서 임의로

읍·면·동체육회 임원 취임 승낙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주 소					
	자택Tel.		직장Tel		휴대Tel.	
재 적 사 항	소 속					
	입회연월일	년	월	일		
	직 위					
	임 기					
비 고						
본인은 상기와 같이 남양주시 읍·면·동체육회의 임원으로서 남양주시체육회 및 본 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하면서 임원에 취임함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h3 style="margin: 0;">남양주시체육회장 귀하</h3>						

탈 퇴(해 산) 원 서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단 체 명				
단 체 소 재 지		연락처	Tel.	
			Fax.	
종 목		회원수		
설 립 년 월 일				
탈퇴이유 요지				
<p>남양주시체육회 읍·면·동체육회 규정 제50조에 의하여 회원단체의 탈퇴를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 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200px;">신 청 인(단체장)</p> <p style="margin-left: 150px;">(인)</p> <p>남양주시체육회장 귀하</p>				
<p>첨 부 서 류</p> <p>1. 탈퇴원서(본회양식) 1부.</p> <p>2. 탈퇴 이유서</p> <p>3.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 총회 관련서류 일체(대의원서명부 ,회의록, 사진 등)</p>				

남양주시체육회 인준승인서

- 읍면동체육회명 :
- 소재지 :
- 대표자 :

남양주시체육회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체육회로 인준 승인함.

20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체 육 회 장

관인 및 인영대장

관인명					
종 류	<input type="checkbox"/> 관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관인		관리부서	남양주시체육회 사무국	
<input type="checkbox"/> 등록 · <input type="checkbox"/> 재등록 관인		등록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긴날	년	월	일
		새긴사람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 유			
		비 고			
폐 기 관 인		등록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기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사유	<input type="checkbox"/> 마멸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폐기방법	<input type="checkbox"/> 소각 <input type="checkbox"/> 이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폐기자 (분실자)	소 속 :		성 명 :
		비 고			
읍·면·동 체육회장 인영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input type="checkbox"/>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input type="checkbox"/>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7호>

읍·면·동체육회 인준동의서

연번	직위	성명	현직	생년월일	임기	신임·연임	동의여부
1	회 장						
2	부회장						
3	부회장						
4	이 사						
5	이 사						
6	이 사						
7	이 사						
8	이 사						
9	감 사						
10	감 사						

20 년 월 일

읍·면·동 장 (직 인)